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1101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혜영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4. 5. 접수 제1504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63,653,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로서, 피고가 2019. 4. 5. 체결한 C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의 부 D에 대하여 63,653,75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D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탈 의사로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부 D에 대하여 63,653,75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 일체를 피고에게 빼돌렸고,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부 D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약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라고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적격의 유무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익을 취득한 수익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2019. 4. 5.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 C, 매수인 E 주식회사일 뿐 피고가 그 매수인이 아닌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는 2019. 12. 30. E 주식회사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금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 D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D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충청남도 당진시 대 1024㎡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569.25㎡

2층 533.49㎡

3층 540.53㎡

4층 540.53㎡

5층 540.53㎡

6층 540.53㎡

7층 540.53㎡

옥탑7층 15.49㎡

지하1층 735.85㎡

지하2층 552.36㎡, 같.

